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10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대시설 이용료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련조항은 배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코자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 일부를 보조(안 제8조)
-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배제(안 제10조 제2항 내지 제14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-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안 제10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
제2항, 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를 삭제한다.

안 제15조를 안 제11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이용료) ①(생략) ②(생략) <신 설>	제8조(이용료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
제10조(시설의 운영) ①회관은 시장이 관 리·운영한다. 다만, 회관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 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 ③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10조(시설의 운영) 회관은 시장이 관리· 운영한다. 다만,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<삭 제> ③ <삭 제>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(생략)	<삭 제>
제12조(위탁의 취소)(생략)	<삭 제>
제13조 (지도감독)(생략)	<삭 제>
제14조(손해배상)(생략)	<삭 제>
제15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1조 (시행규칙)(현행과 같음)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회관은 구미시 원평동 460-1번지에 둔다.

제3조(시설)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.

1. 사무실, 식당 및 자원봉사자실
2. 주간보호실, 물리치료실, 체력단련실
3.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
4. 노래휴게실 및 컴퓨터실
5. 도서열람실, 상담실, 강당
6. 당구장, 탁구장, 바둑·장기실, 서예교실
7. 찜질방 및 이·미용실
8. 공동작업장, 취업알선센터
9. 게이트볼장
10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4조(업무 및 기능)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상담지도사업 : 심리 상담문제 상담해결, 노후생활정보, 회관 등 이용안내
2. 노인취업알선 : 취업상담알선, 직업훈련교육, 공동작업실 운영
3. 재가봉사사업 : 가정봉사원 파견사업, 주간보호실 운영
4. 사회교육사업 : 도서실,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,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
5. 후생복지사업 : 찜질방, 이·미용실, 경로식당, 체력단련실, 휴게실 등 설치운영
6. 의료재활사업 : 진료실,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공
7.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

제5조(운영시간) ①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구 분	시 간	비 고
평 일	09:00 ~ 18:00	
토 요 일	09:00 ~ 15:00	

②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회관 이용대상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는 구미시에 거주

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.

②회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
2.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

제7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
2.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회관 운영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.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

제8조(이용료)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의 사용 허가) ①시장은 노인들의 회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설의 운영) 회관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